신한 땡겨요 적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 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 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신한 땡겨요 적금**

- 상품특징: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단위 적금 납입 미션 달성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2. 거래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계약기간	6개월	
가입금액	최소 1천원 이상 월 30만원 이하	
기본이자율 (2023.04.01	연 2.5% ※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인자 내용 또는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 상세조회 시 확인 가능	
현재, 세전) 우대이자율 (2023.04.01 현재, 세전)	다음의 우대요건 충족 시 최고 연 1.5% 우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①15주 이상 적금 납입 시 연 0.5% ②'땡겨요' 가입 시 연 0.5% ^{주1)} ③'땡겨요'에서 일회용품 미요청하여 3회 이상 주문 시 연 0.5% ^{주2)}	

	~ 게아기가 마기 가 조트베라찬	게되에 대취되는 권으관로	1 0141151		
	※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1) 적금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땡겨요' 가입 시 우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수 1) 적급 만기 전전영입일까지 '펭겨요' 가입 지 우대이사율이 적용됩니다. ※ 적금 신규 전 가입 고객도 포함됩니다.				
	조 식음 전규 전 가입 고식도 포함됩니다. 주2) 적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3회 이상 충족 시 우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최고이자율 (2023.04.01 현재, 세전)	최고 연 4.00% ※ 우대 이자율 최고 연 1.5% 적용 시				
원금또는이자 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자동이체	있습니다. - 자동이체 기간은 이 예금의 신· 실행됩니다.	규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며 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납입할 금액을 설정하여 등록할 수 성, 매주 고객이 지정한 해당 요일에 P 자동이체의 재처리는 불가하며, 리합니다.		
중도해지 이자율 (2023.04.01 현재, 세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약 ○ 1개월 미만: 연 0.10% ○ 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X(1 (단, 연 0.10% 미만으로 신 ** 차감률(2023.04.01 현재) 경과기간 차감률 	-차감률)X 경과월수/계약	월수		
중도해지이자 산 출근 거		를 합계 (원미만 절사)	는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수/계약월수(단, 최저 연 0.10%)		
만기후	○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일 <u>'</u>				
이자율	1/2 (단, 최저금리 연 0.10%)				
(2023.04.01	○ 만기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	내: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	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현재, 세전) 연 이자율의 1/4 (단, 최저금리 연 0.10%) 만기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적금 이자율의 1/2 (단, 최저금리 연 0.10%) 만기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적금 이자율의 1/4 (단, 최저금리 연 0.10%) 면기일 1개월 6개월 6개월초 ※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지급
만기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적금 이자율의 1/2 (단, 최저금리 연 0.10%) 만기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적금 이자율의 1/4 (단, 최저금리 연 0.10%) 연 0.10% 만기일 1개월 6개월 6개월초 ※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일반정기적금 이자율의 1/2 (단, 최저금리 연 0.10%) 만기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적금 이자율의 1/4 (단, 최저금리 연 0.10%) 연 0.10% 만기일 1개월 6개월 6개월초 ※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단, 최저금리 연 0.10%) 만기일 당시 가입기간별일반정기적금 이자율의 1/4 (단, 최저금리 연 0.10%) 연 0.10% 만기일 1개월 6개월 6개월초※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일반정기적금 이자율의 1/4 (단, 최저금리 연 0.10%) 연 0.10% 만기일 1개월 6개월 6개월초 ※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단, 최저금리 연 0.10%) 연 0.10% 만기일 1개월 6개월 6개월초 ※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1개월 6개월 6개월초 ※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 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
_ 1회차
입금금액x이자율x 예치일수/계약기간
만기이자 산출근거 2회차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
· 6회차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모바일,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방법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영업점에서 前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2회 가능
일부해지 ※ 일부해지금액의 이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중도해지 이자율로 지급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원금또는이자
지급관련제한 입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재예치 불가
1) 공동명의, 계좌분할, 양도: 불가
거래제한 2) 담보제공: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100%이내로 가능)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세제혜택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 으로 은행이 기록				
자료열람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에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이버게이뻐기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위법계약해지권	이내의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용제한 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예금 해지 시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불이익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유면예금 및 출연	1397)"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해당없음				
인 용출 처	해당없음				

3.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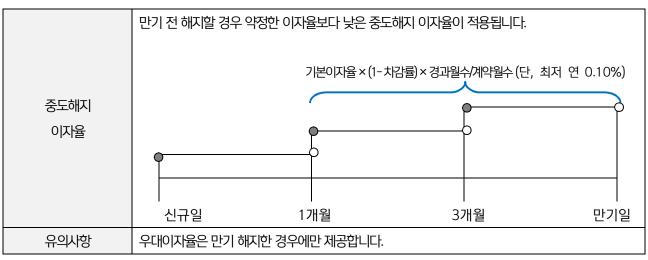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본 상품은 신한은행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 땡겨요 적금 요약 상품설명서

	연 4.00%			
최고이자율	'22.11.01 현재, 세전			
	우대이율 최고 연 1.5% 포함 (자세한 우대이자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계약기간	6개월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 및 월납입금액	1천원 이상 월 30만원 이하			
재예치	Χ	자동해지	가능	
일부해지	0	2회까지 가능		
예금담보대출	0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0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세제혜택	0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